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965 2022. 1. 26.(수) 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**발**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월 21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형용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,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 요양요원은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.

O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O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 (이덕항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¹⁾ 도입되었고,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및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, 장기요양 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
 - ※ 장기요양요원: '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'로 요양보호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사회 복지사, 조리원 등이 이에 해당함.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조제5호)
-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어르신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정서적 활동 등이 포함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질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
¹⁾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, 장기요양 요원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자는 전체 응답자의 25.2%,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는 16.0%, 성희롱 및 성적 신체접촉 등 성폭력을 경험한 자는 9.1%에 이르는 등 권익보호가 절실한 상황임.
-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,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.
- 이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, 숙련된 인력의 소실과 신규 인력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※ 장기요양요원 관련 조례는 현재 13개 광역 시·도에서 제정·시행중에 있으며, 미제정 시·도는 부산, 세종, **충북**, 경북 등 단 4곳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O 안 제4조 및 제5조는,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함)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지원계획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상 불필요한 이중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함.
 -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항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,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, 노동환경 개선 사업,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사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.
- 안 제7조는, 장기요양요원이 업무 현장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폭언· 폭행·성희롱·성폭력 등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됨.
-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,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함)의 설치, 기능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센터의 설치, 기능에 관한 조항들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 - 또한, 안 제10조(운영의 위탁) 조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²⁾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 - ※ 현재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 ・운영 중인 시・도는 총 5곳(서울, 인천, 경기, 경북, 경남)임.
 - 비용추계서에 따르면, 충북의 경우 2023년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.
 - 센터의 운영을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기 보다는 2023년 설치 예정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^{2) 「}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「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」

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(박형용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5 발의연월일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박형용, 이숙애, 이상욱

이의영, 장선배, 허창원

황규철

1. 제안이유

가.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,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 요양요원은 권익에 대한 낮은 관심과 미흡한 지원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,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이 현실임.

나.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
- 나.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2022. 1. 11. ~ 2022. 1. 16

다. 협 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른다.
- 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 하여 수립할 수 있다.
 - 1.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
 - 2.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 요원의 일반현황, 노동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6조(지원 사업)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 - 2.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 - 3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훈련 사업
- 4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- 5.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
- 6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)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・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
- 2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

- 3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 ·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
- 4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
- 5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
- 6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0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4. "장기요양기관"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 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5. "장기요양요원"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 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
 - 2.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
 - 3.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7조의2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 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
 - 2.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
 - 3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

- 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- 제18조의2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) ①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
 - 2.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
 - 3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
 -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·법률·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

- 제36조의2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(이하 "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"라 한다)는 같은 조 제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, 상담실,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,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 발생 요인 :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

○ 관련조문 : 안 제8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·운영

- 사업규모 : 1개소, 종사자3명

- 내 용 : 시설 운영비,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

나. 추계 결과

○세 입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세 입(국비)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

○세 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규모(1개소)	1	1	1	1	1	1
세 출	1,0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

○ 산출기준

- 운영비 : 19,000천원

- 사업비 : 51,000천원 (장기요양요원 지원)

- 인건비 : 130,000천원 (종사자3명)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50%, 도비5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서 : 붙임

연도별 비용 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국고보조금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소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세출	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비 등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소계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재원 조달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국 비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도비	소 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일반회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시·군비		-	-	-	-	-	-
민 간					-	-	-
기 타		_	-	-	-	-	_